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            |     |
|------------|-----|
| 의 안<br>번 호 | 300 |
|------------|-----|

2022년 12월 19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남창진 의원 외 31명

나.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2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남창진 의원)

가. 제안이유

- 1996년부터 시행된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하여 이를 회피하는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 혼잡도가 증가하는 경우 혼잡도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 나. 주요골자

- 우회도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 시장이 혼잡통행료 부과로 우회도로의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이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의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27. ~ 2022. 10. 31.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1)

---

1) 교통정책과-36060호('22.12.15.)

○ 제출의견 : 동의

-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하여 이를 회피하는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회도로 혼잡도가 증가하는 경우 혼잡도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동의함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우회도로를 정의하고, 혼잡통행료 부과로 인해 우회도로 혼잡 증가시 시장이 이를 완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1996년 11월 1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sup>2)</sup>하고 있음

'21년도 남산 1·3호 터널 연간 통행량<sup>3)</sup>은 17,988천대로 나타났고, 서울시는 혼잡통행료로 152억 38백만원을 징수<sup>4)</sup>하였음

2) 남산1호터널, 남산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개요 (서울시 홈페이지)

- 징수시간 : 월~금요일 오전7시~오후9시 ※ 토,일,공휴일 무료통행
- 통행료 : 2,000원(경차·요일제·제3종 저공해차량 50%감면)
- 징수대상 : 2인 이하의 인원(운전자 포함)이 탑승한 10인승이하 승용·승합자동차
  - 면제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의전용, 외교용, 보도용, 공무용, 택시, 경형승합자동차,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제1·2종 저공해자동차
- 납부방법 : 현금, 선·후불교통카드, 바로녹색결제(사전등록)

3) '21년 남산 1·3호 터널 통행량 현황 (단위:천대/연, 서울시설공단 자료)

| 연도    | 합계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 기타    |
|-------|--------|--------|-----|-------|-----|-------|
| 계     | 17,998 | 11,999 | 753 | 1,920 | 31  | 3,295 |
| 1호 터널 | 11,602 | 7,496  | 551 | 1,310 | 22  | 2,222 |
| 3호 터널 | 6,397  | 4,503  | 202 | 610   | 9   | 1,073 |

※ 징수일 기준(평일 07:00~21: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5호는 “우회도로”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통행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로로 시장이 따로 고시한 도로”로 정의하고 있음

'96년 혼잡통행료 도입 당시 교통혼잡지역으로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대해서만 지정·고시되어 있고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된 바가 없어 우회도로 지정·고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291호(1996.10.25.)

▶ 고시내용 : 서울시 교통혼잡지역의 지정

- 남산1호터널 및 연결도로 : 퇴계로 주자동교차로~남산1호~한남로 한남교차로
- 남산3호터널 및 연결도로 : 퇴계로 회현동교차로~남산3호~반포로 경리단교차로

다만, '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sup>5)</sup>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시교통실에서 ‘혼잡통행료 지정’에 대한 용역 등 관련자료가 없는 실정임에 따라 우회도로에 대한 면밀한 조사·검토후 고시해야 할 것임

- 한편 동 개정조례안 제9조의2는 시장이 우회도로 혼잡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sup>6)</sup>’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자료<sup>7)</sup>

4) '21년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연도별 징수액 현황

(단위:백만원)

| 연 도 | 합 계    | 1호 터널 | 2호 터널 |
|-----|--------|-------|-------|
| 징수액 | 15,238 | 9,797 | 5,441 |

5) 2022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김성준 의원 요구자료 26번(혼잡통행료 관련)

6) 2021 서울특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발간등록번호 : 51-6110000-002492-10)

7) 2021년도 남산 1·3호 터널 및 주변 도로 통행속도

(단위:km/h, 市 교통정보센터)

에 따르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2021년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속도는 약 40km/h 내외이나, 대체도로의 성격을 갖는 소월로, 장충단로, 다산로, 한강대로의 통행속도는 15~33km/h 정도로 남산 1·3호 터널에 비해 통행속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각 도로의 주변 지역 토지이용, 기하구조, 진출입로수, 교통량, 버스정류소, 주정차 차량, 대형차량 운행비율, 신호교차로 운영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일 뿐만 아니라 혼잡통행료에 따른 영향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혼잡통행료 징수 회피를 위한 우회도로 이용차량으로 인해 우회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원하지 않는 교통혼잡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우회도로 혼잡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장의 노력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 점    | 오 전  | 낮    | 오 후  |
|--------|------|------|------|
| 남산1호터널 | 41.5 | 39.1 | 41.2 |
| 남산3호터널 | 44.5 | 42.8 | 41.8 |
| 소월로    | 33.6 | 30.8 | 29.5 |
| 장충단로   | 27.3 | 22.7 | 22.1 |
| 다산로    | 22.0 | 17.3 | 15.3 |
| 한강대로   | 26.7 | 23.2 | 21.0 |

※ 오전(7~10시), 낮(11~14시), 오후(18~21시)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회도로”란 제3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통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도로로, 시장이 따로 고시한 도로를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우회도로의 혼잡도 완화 방안 마련) 시장은 혼잡통행료 부과 우회도로의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이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